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229호 2016. 12. 28(수)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04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0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2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8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0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1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 25

예 규

- 인천광역시서구 예규 제92호 인천광역시 서구 성희롱 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 --- 69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17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76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1703호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 99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04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사용예정일”을 “사용 예정일”로, “이하”회관”이라”를 “이하 ”회관”이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관일정”을 “대관 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법령상”을 “법령 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허가 내용”을 “허가 내용”으로, “사용예정일”을 “사용 예정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허가”를 “사용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가능”을 “사용 가능”으로, “납부방법”을 “납부 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허가대장”을 “사용허가 대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감면 또는 면제신청”을 “감면 또는 면제 신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용자의 변상책임)”을 “(주의의무)”로 하고, 같은 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중 “행사안내 및 안전요원”을 “행사 안내 및 안전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 중 “동의없이”을 “동의 없이”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검인신청”을 “검인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관사용”을 “회관 사용”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수급”을 “수요·공급”으로,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강사의 해촉)”을 “(강사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라”를 “사람”으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미만으로서”를 “미만으로써”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강사는 성실한 강좌운영 및 회원”을 “담당 강사는 성실한 강좌 운영 및 회원”으로, “추가확보”를 “추가 확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종”을 “시작과 종료”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접수보고 및 대책”을 “접수 보고 및 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교습시”를 “교습 시”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득하여야”를 “얻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수업준비 및 강좌”를 “수업 준비 및 강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수영지도 강사)”를 “(수영 지도강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영지도 강사”를 “수영 지도강사”로, “강습진행”을 “강습 진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입수지도”를 “입수 지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영장 내 청결유지 및 수영 용구의 보관, 관리 철저

제16조의 제목 “(생활체육 강사)”를 “(생활체육 지도강사)”로 한다.

제17조제5호 중 “일지작성”을 “일지 작성”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회관운영 및 공익상”을 “회관 운영 및 공익상”으로, “득하여”를 “얻어”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능토록”을 “가능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 관리하여야”를 “기록·관리하여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유지관리 및 수질관리”를 “시설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로, “의”를 “호의”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자체운영규정)”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검단복지회관사용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E-MAIL :			연락처	사 자		
공연, 행사의 명 칭							
공연, 행사의 내 용							
사 용 기 간 및 시 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일 회	시간)
행 사 . 안 내 수 요 원 수				출 연 인 원 수			
				관 램 예 상 인 원 수			
사 용 시 설 및 시 설	기 본 시 설	<input type="checkbox"/> 대강당					
	부 속 시 설	<input type="checkbox"/> 조명 <input type="checkbox"/> 음향(마이크 추가 개) <input type="checkbox"/> 냉.난방 (시간) <input type="checkbox"/> 피아노 <input type="checkbox"/> 공바톤					
입 장 료							
비 고	첨부 :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						
<p>「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p> <p>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별지 제4호서식)

검단복지회관사용변경허가서

허가번호	-						
행사명 (단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본행사일	년 월 일 월 일 요일	일 요일 (요일 일간)	사전준비일		년 월 일 월 일 요일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변경 내역							
시설구분		사용시간 및 사용여부			사 용 료		
기본시설 (대강당)	공연(행사)준비	당 초					
		변경(추가)					
	본 행사	당 초					
		변경(추가)					
부속설비	무대조명	연출조명					
		핀 스포트					
	무대음향	기 본					
		마이크(개당)					
	피아노						
	V. P.						
	M. R.						
	녹 음						
	냉 방						
	난 방						
공바톤							
기타사항	“허가조건” 참조		총 사용료		금 _____ 원정 (W _____ 원)		
<p>「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p>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0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체육센터 사용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신청시”를 “신청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좌운영”을 “강좌 운영”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구국민체육센터 시설(변경)사용 신청서				담당자	관 장	결 재
사 용 자	단 체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 법인)		성별 (남/여)		
	주 소			연 락 번 호	전 화 : H P :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	목 적			사 용 인 원	명	
	행사내용					
사용기간	대관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시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까지	(일간)
	본행사시간	년 월 일 시	준비시작 시간		년 월 일 시	
시설사용 및 부대시설	○ 마이크 ○ 빔프로젝트 ○ 냉·난방 ○ 에어로빅실 ○ 세미나실 ○ 체육관					
산출내역						
사 용 료	일금 원정(금)					
<p>위와 같이 서구 국민체육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청인 단 체 : (성 명) : 주 소 :</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장 귀하</p>						

(별지 제1호서식-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용자께서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지 알려드립니다. 공단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또는 개별통지)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목적

- 공단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회원관리, 대관등록관리, 고지서발행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사용목적, 대관기간
- 선택항목 : 사용인원, 행사내용
- 개인정보 수집방법 : 방문 및 인터넷수강 신청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방식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탈퇴 또는 삭제 요구시 까지)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 : 아래의 경우 외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에 의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이용자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 개인정보 조회, 수정 및 해지, 삭제 등의 요청은 “내 정보 변경” 및 “삭제요청”등을 클릭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직접 수정하거나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
-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함.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 의함.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회원가입 및 홈페이지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 받는 자 : _____ ○ 제공 목적 : _____ ○ 제공항목 : _____
- 보유기간 : _____ ○ 수집동의 거부시 제한되는 항목 : _____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서구국민체육센터 시설사용 취하서(제3조 관련)

사 용 자	단 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연 락 번 호		
	환불계좌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	목 적		사 용 인 원			
	행사내용					
사용기간	사용취하 대관기간				(시간)	
					(일)	
					(시간)	
					(일)	

상기 본인은 위의 체육관 사용을 ()으로 인하여 대관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인천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장 귀하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을 “제1항에 따라 허가 받”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이하 “게이트볼장”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보, 인터넷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재정운영계획서

제3조제3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게이트볼장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을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로, “구청장이 운영규정을 따로”를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남/여)	
허 가 사 항	허 가 내 용		변 경 신 청 내 용			
사 용 구 분						
사용시설명 또는 사용내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	주 간					
	야 간					
기 타						
허 가 조 건						
<p>「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인</p>						

(별지 제3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사용(변경)허가서						
사 용 자	주 소					
	성 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사용목적						
사 용 부대시설	조명(라이트)					
<p>「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허가조건 참조)</p> <p style="text-align: center;">◆ 허 가 조 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실내게이트볼장 내에서의 음식물의 분배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합니다. ○ 채떨이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이 오손 또는 파손될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조치하고, 사고 발생 시 모든 사항은 이용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시설 내에서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 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 임의로 부착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후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인천광역시 서구청장</p>						

(별지 제5호서식)

위 탁 신 청 서

1. 시설명 :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2. 신청자 기재사항

법인(단체)명		법 인 구 분	시설(), 지원()
허가(등록)기관		허가(등록)일자	
허가(등록)번호		법인(단체)목적사업	
대표이사 성명		대표이사 생년월일	성별 (남/여)
대표이사 주소			
법인 (단체) 현 소 재 지			
재 정 상 태	동산 : 원, 부동산 : 원		

3. 제출서류

- 가. 사업계획서
나. 해당 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재정운영계획서 각 1부
다. 대표자 이력서
라. 법인장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마.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업무분장사항 포함)

4. 약정사항

- 가. 수탁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법인(단체)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0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를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우수선수”를 “우수 선수(이하 “선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 우수선수”를 “선수”로, “장애인 우수 선수”를 “선수”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우수 선수(이하 “선수”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선수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규모이상”을 “규모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요하는”을 “필요하는”으로, “선수생활”을 “선수 생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태만하거나”를 “게을리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관련단체”를 “관련 단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종대회”를 “각종 대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득한”을 “받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예산범위 내”를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예산 범위 내”를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전일”을 “전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요하여”를 “필요하여”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청 소속으에”를 “구 소속으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예산범위 내”를 “예산의 범위”로, “인천광역시 서구”를 “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0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관광체육과”를 “인천광역시 서구 (이하 “구”라 한다) 문화관광체육과”로, “문화관광체육과장”을 “구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고가 있을 경우”를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4조제6항 단서 중 “최소계약유지기간”을 “최소 계약 유지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자의”를 “스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태만히 하거나”를 “게을리하거나”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각종대회”를 “각종 대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전일”을 “전날”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가산하여”를 “가산(算加)하여”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최소계약유지기간”을 “최소 계약 유지기간”으로, “의무기간”을 “의무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선수”를 “우수 선수”로, “우수선수”를 “우수 선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동일금액”을 “동일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입상보상금”을 “입상 보상금”으로, “입상성적”을 “입상 성적”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당 구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운동경기부”로, “월 평균보수”를 “월평균 보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사유에 의하지 않”을 “사유를 제외하”로 한다.

제18조 중 “구입 지원”을 “구입·지원”으로 한다.

제20조 중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을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으로,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신 분 증

<앞 면>

신분증
사진
No.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

<뒷 면>

소 속 : 인천광역시 서구청
직 명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세로 63×90mm)

[별지 제12호서식]

퇴 직 급 여 청 구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퇴 직 년 월 일	
퇴직당시 소속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인라인롤러부)	퇴직당시직명	

첨 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

소 속	직 명	근 무 기 간	발 령 청	확인(업무담당)
		. . . ~ . . . (총근무일수 :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 퇴직전 : 원	○ 퇴직금 : 원	○ 퇴직금
월평균 보수	산출액	전환금 : 원
		납부액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임용 및 시험 등에”를 “임용·시험·승진 등에”로 한다.

제2조 중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를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을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총무국장, 문화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국장과”로, “및 법 제7조제3항”을 “이내 및 법 제7조제5항”으로, “위원으로”를 “9명으로”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한다”를 “맡아 처리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1조의2”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실비지급)”을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회의에 참석한 인사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실비를”을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를”로 한다.

제9조 중 “부의된”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를 “영 제6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시험으로서”를 “시험으로써”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2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응시 연령을”을 각각 “응시연령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험의 실시를 요구”를 “시험을 실시”로 한다.

제17조 중 “기산한다”를 “계산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3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 중 “2분의 1”을 “3분의 2”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인천광역시 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가산한다.”를 “가산(加算)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을 “법 제27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4할”을 “40퍼센트”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등”을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을 “연구및지도직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받은”을 “받는”으로,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을 “임용예정직급은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을 “연구및지도직규정”으로, “선발기준”을 “그 선발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력경쟁임용대상자”를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로, “규정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8호,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을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9호,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을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시험으로서”를 “시험으로써”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계산함에 있어서”를 “계산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를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직급에 대한”을 “직급의”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장려수당지급대상란”을 “장려수당지급대상”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을 “연구및지도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0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별표 14] 및 별표[14의2]”를 “별표 14 및 별표 14의2”로, “자 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별표[별표 7] 및 [별표 8]”을 “별표 7 및 별표 8”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청장”으로, “인전하는”을 “인정하는”으로, “전직예정”을 “전직임용예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를 “임용후보자등록원서와”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임용결격사유”를 “임용 결격사유”로 한다.

제30조 전단 중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를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제32조제1항 중 “경력경쟁임용된”을 “임용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

정직공무원으로서의 3년을 초과하여”를 “특정직공무원으로서”로, “승진소요최저연수 2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을 “연구및지도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를 “국정과제”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해당직위 1년”을 “해당 직위 1년 6개월”로, “영 제27조의 규정”을 “영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당직렬”을 “해당 직렬”로, “현재”를 “뚜렛”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신체장애자는”을 “신체장애인은”으로 한다.

제36조 중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을 “연구및지도직규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운영상”을 “운영 상”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구 본청”을 “구본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하여 동에”를 “동에”로 한다.

제39조 중 “임용권자는”을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40조 중 “법 제61조의 규정”을 “법 제61조”로 한다.

별표 2의 제목란 중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를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로 한다.

별표 3, 별표 4,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11, 별표 1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의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15조 관련)

직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렬	직류		
농촌지도	전 직 류 (농촌 생활 직류는 제외한다)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사람
	농촌생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사람
어촌지도	어 촌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사람

- 비 고 : 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한 사람”이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24조제1항 관련)

		계급		
직렬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항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설	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위생	위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중식,일식,양식,복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4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 정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정비,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 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p>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 능 장 : 전자기기</p> <p>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p> <p>기 능 장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p> <p>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금 속	<p>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야 금	<p>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 유	<p>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p>기 능 사 : 염색</p> <p>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p>
	일반화공	<p>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 능 장 : 위험물, 가스</p> <p>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농 업	일반농업	<p>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p> <p>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잠 업	<p>기 사 : 생물공학</p> <p>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p>
	농 화 학	<p>기 술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p> <p>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p> <p>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p> <p>기 능 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수산물검사	산업기사 :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p>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 능 사 : 조정, 산림, 환경</p>
	대 기	<p>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 능 사 : 조정, 산림, 환경</p>
	폐 기 물	<p>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 능 사 : 조정, 산림, 환경</p>
항 공	일반항공	<p>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p> <p>기 사 : 항공</p> <p>산업기사 : 항공</p>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p> <p>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정, 지적, 응용지질, 교통</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정, 지적, 교통</p> <p>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정, 지적</p>
	일반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건 축	<p>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채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시설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방송통신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통신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기술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 리	조 리	기 능 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 능 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 생	사 역	기 능 장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성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 능 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2.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재 경 국제통상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 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 사(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 사(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 사(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일반전기	일반전기			무대조명 전문인 1급	무대조명 전문인 2급	무대조명 전문인 3급
	일반기계	일반기계			무대기계 전문인 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 전문인 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 전문인 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기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숙 기	숙기				한글숙기 12급(5)	한글숙기 123급(2)	한글숙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1. < 삭제 >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6의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6의2] <신설> (개정 2016.3.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23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6 및 별표 6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6 및 별표 6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6 및 별표 6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6 및 별표 6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6 및 별표 6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 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1]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22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 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농업기계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p>공 업</p>	<p>기계운전</p>	<p>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p>산업기사자격 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 관리사</p>

공 업	조 선	<p>기술사 : 조선 기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능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p>	
	일반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p>	
	전 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열관리</p>	<p>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p>
	금 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야 금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 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공 업	일반화학	<p>기술사 : 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학,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자 원	<p>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p>	
농 업	일반농업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p>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p>
	잠 업	<p>기사 :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p>	
	식물검역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p>	
	농 화학	<p>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p>	
	축 산	<p>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 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 방 사선취급감독 자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적 용:가축인공수 정사</p>
	생명유전	<p>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p>	<p>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 반), 방사선취 급감독자</p>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능사 : 잠수	
	일반수산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수산제조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 산 물 검 사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능사 : 수산식품가공	
	수산증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어 로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p>보 건</p>	<p>보 건</p>	<p>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2급</p> <p>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p>
<p>식품위생</p>	<p>식품위생</p>	<p>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p>
<p>의료기술</p>	<p>의료기술</p>	<p>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 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p>
<p>환 경</p>	<p>일반환경</p>	<p>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환 경	수 질	<p>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p> <p>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대 기	<p>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p> <p>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폐 기 물	<p>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시 설	도시계획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p> <p>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일반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시 설	건 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p>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교통시설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도시교통 시설 계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디자인	<p>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송통신	통신사	<p>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p> <p>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p>	
	통신기술	<p>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송기술	<p>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자통신 기술	<p>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p>	
시설관리	시설관리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p>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p>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써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시설관리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농촌지도	기계 농업기계	<p>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p>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공업연구	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기능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p>	
	전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공업연구	금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p>	
	섬유	<p>기술사 :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p> <p>기능장 : 염색</p> <p>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p> <p>기능사 :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화학	<p>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관리, 가스</p> <p>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능사 :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p>	
	산업경영	<p>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p> <p>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p> <p>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p>	
	물리	<p>기술사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p> <p>기사 :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p> <p>산업기사 :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p>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p>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p> <p>기사 : 식품, 생물공학, 축산</p> <p>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p>	<p>산업기사 자격증</p> <p>가산 비율 적용</p> <p>: 영양사, 위생사</p>
농업연구	작물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p>	<p>기능사 자격증</p> <p>가산비율 적용</p> <p>: 농산물품질관리사</p>
농촌지도	농업	<p>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p>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벼짓중근,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농업연구	원 예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 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 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 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 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잠업근총	기술사 : 생사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 자
	농촌생활	기술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 처리, 식품,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 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생물공학 산업기사 : 섬유가공, 섬유물리, 섬유화학,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 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평 생교육사1급,사 회조사분석사1 급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적 용 : 평생교육 사 2급, 사회조 사분석사2급 영 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평생교육 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 소년지도사1급, 평 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p>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농업연구 농촌지도	축 산 축 산	<p>기 술 사 : 축산, 식품</p> <p>기 사 : 축산,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식품</p> <p>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p>
녹지연구 농촌지도	임 업 조 경 임 업	<p>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p> <p>기 을 장 : 산림</p> <p>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p> <p>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p>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p>	
수의연구 농촌지도	수 의 가축위생	<p>기 술 사 : 축산</p> <p>기 사 : 축산</p> <p>산업기사 : 축산</p> <p>기 능 사 : 축산</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p>
해양수산연구 어촌지도	해양환경 수산자원 어 촌	<p>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p>기 능 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p>	

해양수산 연 구	수산양식	<p>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p>	
	수산공학	<p>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어병,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 능 사 : 어로</p>	
	수산가공	<p>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 능 사 : 수산식품가공</p>	
보건연구	의 학	-	<p>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p>
	약 학	-	<p>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p>
	공중보건	<p>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의공 기 능 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p>	<p>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 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 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p>
환경연구	환 경	<p>기 술 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 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 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 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 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 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 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 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 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p>

시설연구	토 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촌지도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시설연구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19]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34조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교육 행정, 사회 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 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 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 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 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 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 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 관리, 소방,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 음진동, 선박건축, 선박기계), 운송 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 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 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 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 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 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 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 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 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조 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 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 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 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 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 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 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 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 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 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 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 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 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 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 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 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 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 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 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 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 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 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공 업 (전 기)	기술사(방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 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 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 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 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 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 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 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 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 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 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 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 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 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 지탈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직렬 \ 계급	5 급	6급·7급	8급·9급
공업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면,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업 (섬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업 (화학가)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공업 (자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업 (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업 (축산)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농업 (녹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의	수의사		
해양수산 (수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선박)	기술사(선박설계, 선박 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	산업기사(응급구조사2급)
의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통신, 자가용조종사)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시설 (토목, 수도,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설 (지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직렬 \ 계급	5 급	6급·7급	8급·9급
시 설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 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직렬 \ 계급	5 급	6급·7급	8급·9급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운할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화공운영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 고분자제품제조)
선박해양 운영 선박관리 운영		기술사(선박설계, 선박 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 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2. 연구사

계급 직렬	연 구 사
공업 연구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축,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계,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p>
농업 연구	<p>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p>
농업 연구 (잡업곤충)	기술사(생사)
농업 연구 (축 산)	<p>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p>
농업 연구 (농 공)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p>
농업 연구 (농 식품 개발)	<p>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 영양사, 위생사</p>
녹지 연구	<p>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p>
해양 수산 연구	<p>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p>

직렬 \ 계급	연 구 사
보건 연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 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설 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 연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3. 지도사

직렬 \ 계급	지 도 사
농 촌 지 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 촌 지 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비고 :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4. 삭제

[별지 제2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생년월일	-	성명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 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우 수	
		보 통	
		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답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 "우수"와 "보통"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2의2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생년월일	-	성명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관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붉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여성정책업무 담당부서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구청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에 성희롱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여성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의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채용) 담당부서의 장은 신규임용(채용)자가 2개월 이내에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임용(채용)자가 배치된 부서 또는 기관의 장과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직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신규임용(채용)자가 배치된 부서(기관)의 장과 여성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 신청)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 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여성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구청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와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처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여성정책업무 국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감사, 인사, 여성정책업무 부서의 장, 구 공무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공무원 및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로서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심의가 종결됨으로써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을 한 경우

② 신고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특정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5조(징계) ① 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성희롱 등을 저지른 행위자에 대하여 의원면직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구청장은 성희롱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 청 인		고 충 내 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 인	
		성 명	소속부서				과장	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성별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담 (신청) 내용	<p>※ 6하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p>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 첨부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17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6. 12.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동 신설(청라3동) 및 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명칭 변경사항 발생
- 수강료 수납에 대하여 현금만 징수하던 것을 신용카드도 사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도모
- 알기 쉬운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등 재정비

2. 주요내용

- 청라3동 분동에 따른 제1권역 개정(시행규칙 제 3조)
- 수강료 신용카드 결제 방식 도입을 위한 규정 보완(시행규칙 제 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515, FAX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행정동 신설(청라3동) 및 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명칭 변경사항 발생
- 수강료 수납에 대하여 현금만 징수하던 것을 신용카드도 사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도모

3. 주요내용

- 청라3동 분동에 따른 제1권역 개정
- 수강료 신용카드 결제 방식 도입을 위한 규정 보완

4.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주민자치센터”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지역특성”을 “지역 특성”으로, “선정, 운영”을 “선정·운영”으로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실적”을 “운영 실적”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센터”로, “구”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청라2동”을 “청라2동, 청라3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조정, 운영”을 “조정·운영”으로 한다.

제6조 중 “주민자치센터”를 각각 “자치센터”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내용”을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주민자치센터”를 각각 “자치센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설여건”을 “시설 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기강좌”

를 “인기 강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센터”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센터”로, “인천광역시 서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수강료는 접수기간 중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위원회가 징수한다. 다만, 현금으로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의 통장에 다음 날까지 입금 처리한다.

제10조제3호 및 제5호 중 “주민자치센터”를 각각 “자치센터”로 한다.

제11조제1호 및 제2호 중 “개시”를 각각 “시작”으로, 같은 호 중 “신청 일”을 “신청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센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자치센터”를 각각 “자치센터”로 한다.

제12조의2 제2항 중 “범위 내에서”를 각각 “범위에서”로 한다.

제13조 중 “등에 대하여”를 “등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자치”를 “자치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봉사활동시”를 “봉사활동시”로 한다.

제18조 중 “위·해촉”을 “위촉 및 위촉 해제”로 한다.

제19조 중 “주민자치센터”를 각각 “자치센터”로 한다.

제20조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

치센터”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 할”을 “위촉 해제할”로 한다.

제25조 중 “강의수준”을 “강의 수준”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센터”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각각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주민자치위원 위·해촉”을 “위원 위촉·위촉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한다.

제28조 중 “위원사항”을 “위원 사항”으로 한다.

제29조 본문 중 “위원장”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회의개최”를 “회의 개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좌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강좌		수강료	원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수강기간	20 . . . ~ 20 . .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 강좌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서구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			

주민자치센터 수강증

주민자치센터 수강증(수강생용)			
발급번호	(접수자 : (인))		
수강과목			
성 명		연락처	
주 소			
수 강 료	금 원(금 원)		
수강기간	20 . . . ~ 20 . .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동 주민자치위원장(인)			

※ 뒷면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및 구청,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시책사업 홍보용으로이용
(수강증 발급번호 구성 : 20 (년도)-1(발급월)-1(일련번호))

(별지 제21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동 공고 제 호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근무시간 중에 한함)
2. 접수장소 :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직원 :)
3. 자격요건
 - 동 관내에 거주하거나 단체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동 관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주민) 또는 추천서(추천자), 자필이력서 각 1부
5. 참고사항 :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임기 2년(연임 가능)으로 조례 제16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며 매월 정해진 시간을 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 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동장

(별지 제22호서식)

주민자치위원 추천(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 력	
전화번호		직 업	
주요경력			
추천사유 (신청사유)			

위의 사람을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후보자로 추천(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천(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u>관하여</u> <u>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필요</u> ----- -----.</p>
<p>제2조(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 ① <u>주민자치센터</u>(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지역 복지, 주민편익, 지역사회진흥 등의 자치 프로그램과 문화여가, 시민교육 등의 문화교실 강좌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p>	<p>제2조(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 ① <u>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u>----- ----- ----- ----- -----.</p>
<p>② 각 자치센터는 「<u>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u>지역특성</u>에 맞는 프로그램을 1개 이상 <u>선정, 운영</u>하여야 하며 상·하반기 실적을 <u>구청장</u>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 「<u>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u>」----- ----- <u>지역 특성</u>----- ----- <u>선정 · 운영</u>----- ----- <u>인천광역시 서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p>
<p>③ <u>운영실적</u>이 부진한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동</p>	<p>③ <u>운영 실적</u>----- ----- -----</p>

장이 폐지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조(권역별 운영) 조례 제6조제 3항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강좌 프로그램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 전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1권역(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1동, 청라2동)
2. ~ 5. (생략)

제5조(이용시간) ① 자치센터 시설의 이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자치센터 시설관리나 이용주민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조(자치센터 관리를 위한 운영서식)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신청서/시설사용승인서, 서약서(별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권역별 운영) -----
----- 자치센터-----

-----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

1. -----
----- 청라2동, 청라3동-----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이용시간) ① -----

----- 조정·운영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자치센터 관리를 위한 운영서식) 자치센터-----

-----.

1. 자치센터 -----

2. 자치센터 -----

지 제2호서식)	-----
3. <u>주민자치센터</u> 강좌 프로그램 수강신청서/수강증(별지 제3호 서식)	3. <u>자치센터</u> ----- ----- -----
4. <u>주민자치센터</u> 수강생 출석부 (별지 제4호서식)	4. <u>자치센터</u> ----- -----
5. <u>주민자치센터</u> 수강생 접수대 장 및 수료자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5. <u>자치센터</u> ----- ----- -----
6. <u>주민자치센터</u> 수입결의서(별 지 제6호서식)	6. <u>자치센터</u> ----- -----
7. <u>주민자치센터</u> 사용료(수강 료) 면제 신청서(별지 제7호서 식)	7. <u>자치센터</u> ----- ----- --
8. <u>주민자치센터</u> 사용료(수강 료) 환불 신청서/환불액 결정 통보서(별지 제8호서식)	8. <u>자치센터</u> ----- ----- -----
9. <u>주민자치센터</u> 지출결의서(별 지 제9호서식)	9. <u>자치센터</u> ----- -----
10. <u>주민자치센터</u> 회계출납부 (별지 제10호서식)	10. <u>자치센터</u> ----- -----
11. <u>주민자치센터</u> 시설·장비· 물품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 식)	11. <u>자치센터</u> ----- ----- --
12. <u>주민자치센터</u> 자원봉사 신 청서(별지 제12호서식)	12. <u>자치센터</u> ----- -----

13.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14.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명찰(별지 제14호서식)

제7조(보고 등) 동장은 조례 제14
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주민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을 구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별지 제15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
과보고서(별지 제16호서식)

제8조(수강생 모집) ① 프로그램
의 내용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
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정원을
정하고, 동 홈페이지, 자체 소식
지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적
극 홍보하되 정원 외 접수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활
용하여 예비자로 관리하여야 한
다.

②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주민
들이 골고루 자치센터 수강기회
를 가질 수 있도록 대기자가 많
은 일부 인기강좌의 경우 수료

13. 자치센터 -----

14. 자치센터 -----

제7조(보고 등) -----

----- 자
치센터의 운영 내용-----
-----.

1. 자치센터 -----

2. 자치센터 -----

제8조(수강생 모집) ① -----
----- 시설 여건 -----

② -----

----- 인기 강좌-----

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수강관리 및 사용신청 등)

- ① (생략)
- ② 자치센터의 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강좌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수강증으로 같음한다.
- ③ 수강생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토록 하고 일정기간 수료과정을 끝마친 수료자에 대해서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동아리 및 자원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수강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 신청과 동시에 징수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서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 2. 수강료는 매월 말 접수기간

-----.

제9조(수강관리 및 사용신청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사람은 -----

-----.
- ③ -----

----- 자치센터 -----

-----.

제10조(수강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

-----.

- 1. ----- 자치센터 -----

----- 구 -----
-----.
- 2. 수강료는 접수기간 중 선납

중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위원회가 징수하되,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운 금융기관에 그 다음 날까지 입금 처리한다. <후단 신설>

3. 수강료 등을 징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회계출납부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4. (생략)

5.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수강 및 사용신청의 취소) 수강(사용)자가 납부한 수강(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반환한다.

1. 프로그램 개시 전 또는 자치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수강료 전액환불)

2. 프로그램 개시 후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이 경우,

을 원칙으로 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위원회가 징수한다. 다만, 현금으로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의 통장에 다음 날까지 입금 처리한다.

3. -----

----- 자치센터 -----
-----.

4. (현행과 같음)

5. ----- 자치센터 -----

-----.

제11조(수강 및 사용신청의 취소) -----

-----.

1. ----- 시작 -----

2. ----- 시작 -----

환불 신청 일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환불)

-- 신청일-----

3. 주민자치센터의 공공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3. 자치센터-----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경비의 집행) ①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경비 사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운영경비의 집행) ①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비

3. 자치센터 -----

4.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 및 개선비(공공요금 포함)

4. 자치센터 -----

5.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비용

5. 자치센터 -----

6. 주민자치센터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6. 자치센터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② 경비의 집행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

② -----

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회계출납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 (생략)

②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의 수당은 수강료 징수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3조(시설 및 물품) 동장은 자치센터 및 위원회가 사용 중인 시설과 물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설·장비·물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① 동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의 근무 및 활동상황 등을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행정)지원 자원봉사

----- 자치센터 -----
-----.

제12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에서 -----
----- 범위에서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시설 및 물품) -----

----- 등은 -----
-----.

제14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① -----

-----.

1. 자치센터 -----

2. 주민자치센터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별지 제18호서식)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 계획서(별지 제19호서식)

4. 주민자치센터 강사관리대장 (강사 Bank 운영) (별지 제20호서식)

제20조(자격요건)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한 자

제21조(강사모집) ① 강사는 추천 및 공개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를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동장에게 강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추천 및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강사에 대하여 자격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

2. 자치센터 -----

3. 자치센터 -----

4. 자치센터 -----

제20조(자격요건) -----
-----.

1. (현행과 같음)
2. -----

사람

3. ----- 자치센터 -----

----- 사람

제21조(강사모집) ① -----

----- 사람은 -----
-----.

② -----

----- 정해진 -----

로 하되, 강사 만족도 평가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3조(해촉)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2. (생략)

제25조(강사의 중복위촉 제한) 구 청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강의수준의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 1명이 구 관내 주민자치센터에서 담당 할 수 있는 강좌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주민자치위원 추천서 등 서식)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별지 제21호서식)
2. 주민자치위원 추천(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3. 주민자치위원 위촉장(별지 제23호서식)
4.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관리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위촉 해제) -----

----- 위
촉 해제할 -----.

1. 2. (현행과 같음)

제25조(강사의 중복위촉 제한) --

----- 강의 수준-----
----- 자치센터-----
-----.

제26조(주민자치위원 추천서 등 서식) -----

-----.

1.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
2. 위원 -----
3. 위원 -----
4. 위원 위촉·위촉해제 -----

<p>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 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 -----. ----- -----.</p>
---	--

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 . ~ . . . ○ 내 용 - 의견수렴	-	-	-
입 법 예 고			
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 간 . . . ~ . . . ○ 내 용 - 구보게재 - 인터넷	-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1703호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서구에서 시행하는 「금곡동 소1-1 및 1-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6. 12.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금곡동 소1-1호선 외 1개노선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시행자의 명칭 : 인천광역시 서구
 - 나. 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3. 사업시행기간 : 2015. 09. 07. ~ 2017. 12. 31.
4. 사업의 근거
 -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146호(2014.09.22.)
 - 실시계획인가고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32호(2015.09.07.)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27호(2016.02.22.)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44호(2016.03.28.)
5. 수용재결 신청대상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및 관계인 : “별첨”
6. 공고 및 열람기간 : 2016. 12. 28. ~ 1. 11.(15일간)

7.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32-560-4485)

8. 공고내용

- 가. 인천광역시 서구가 시행하는 【금곡동 소1-1호선 외 1개노선 도로개설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 나.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열람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
을시에는 공고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유자 및 관계인 현황(토지)

사업명 : 금곡동 소1-1호선 외 1개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동,리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지분율)	주소	성명	
1	서구 금곡동	342-4	도	210	인천 서구 금곡동 342-2	이애훈(106/434)			
2					인천 서구 금곡동 479	양봉석 (328/2,170)			
3					인천 서구 금곡동 342-2	양석환 (328/2,170)			
4	서구 금곡동	340-26	대	2	서울 강남구 언주로 106번길 22 403호(역삼동)	전하영 (1/1)	서울 성북구 장위로 131(장위동)	장위2동 새마을금고	
5	서구 금곡동	337-7	도	162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 2도 59번길 7 303-1902호(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일산파밀리에 3단 지)	정윤근 (1/1)			
6	서구 금곡동	336-20	대	9	서울 은평구 연서로 44길 7 421-1601(진관동, 은평뉴타운 폭포동)	김충남 (1/1)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파주엘지로지점)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7	서구 금곡동	480-3	대	3	인천 서구 금곡동 480-2	양태희 (1/2)			
8					인천 서구 금곡동 480-2	김재원 (1/2)			
9	서구 금곡동	396-1	전	120	인천 서구 금곡동 390	신경식 (1/1)	인천 서구 완정로 158(마전동)	검단신용 협동조합	
10	서구 금곡동	388-8	전	8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서동로 안흥4길 56-8	안규동 (1/1)			
11	서구 금곡동	399-4	대	23	서울 종로구 대학로 19(연지동)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 (1/1)			
12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01번f 44, 4동 207호 (마전동, 한일아파트)	최병호 (32.97/579)			
13					1067 AVENIDA SELVA #218 FULLERTON, CA 92823	박성열 (32.97/579)			
14					인천 서구 봉수대로 1440번길 10, 304-205(검단풍림아이원아파트)	이중오 (40.17/579)			
15					인천 남구 매소홀로 514번길 14, 6동 301호(문학동, 선광하이츠빌라)	이윤희 (38.64/579)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61(제물포지점)	백령농업 협동조합	
16					1067 AVENIDA SELVA #218 FULLERTON, CA 92823	박성열 (32.97/579)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주소	성명 (지분율)	주소	성명	
17	서구 금곡동	397-2	대	146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길 5, 202호 (금곡동, 금성빌라)	최종순 (32.97/579)			
18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길 5, 203호 (금곡동, 금성빌라)	오봉국 (40.17/579)			
19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길 5, 205호 (금곡동, 금성빌라)	양옥주 (38.64/579)			
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38길 39(상인동)	권준익 (32.97/579)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계산역지점)	주식회사 국민은행	
21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길 5, 302호 (금곡동, 금성빌라)	윤석분 (32.97/579)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김포서지점)	주식회사 국민은행	
22					1067 AVENIDA SELVA #218 FULLERTON, CA 92823	박성열 (40.17/579)			
23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길 5, 2동 305호 (금곡동, 금성빌라)	허만훈 (38.64/579)			
24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372-22, 110동 1206호(주례동, 반도보라매머드타운)	김성자 (32.97/579)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임학동지점)	주식회사 국민은행	
25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636-8(금곡동)	주식회사 코벨소 (32.97/579)			
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 36, 302호 (노형동, 영보복합빌딩)	김수경 (40.17/579)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인천금융센터)	주식회사 신한은행	
27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495번길 7, 110동 201호 (검암동, 서해그랑블아파트)	이은정 (38.64/579)			
28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01번f 44, 4동 207호 (마전동, 한일아파트)	최병호 (32.97/579)			
29					1067 AVENIDA SELVA #218 FULLERTON, CA 92823	박성열 (32.97/579)			
30					인천 서구 봉수대로 1440번길 10, 304-205(검단풍림아이원아파트)	이종오 (40.17/579)			
31	인천 남구 매소홀로 514번길 14, 6동 301호(문학동, 선광하이츠빌라)	이윤희 (38.64/579)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61(제물포지점)	백령농업 협동조합					
32	1067 AVENIDA SELVA #218 FULLERTON, CA 92823	박성열 (32.97/579)							
33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길 5, 202호 (금곡동, 금성빌라)	최종순 (32.97/579)							
34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길 5, 203호 (금곡동, 금성빌라)	오봉국 (40.17/579)							
35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길 5, 205호 (금곡동, 금성빌라)	양옥주 (38.64/579)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동,리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지분율)	주소	성명	
36	서구 금곡동	397-3	대	6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38길 39(상인동)	권준익 (32.97/579)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계산역지점)	주식회사 국민은행	
37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길 5, 302호 (금곡동, 금성빌라)	윤석분 (32.97/579)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김포서지점)	주식회사 국민은행	
38					1067 AVENIDA SELVA #218 FULLERTON, CA 92823	박성열 (40.17/579)			
39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길 5, 2동 305호(금곡동, 금성빌라)	허만훈 (38.64/579)			
40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372-22, 110동 1206호(주례동, 반도보라매머드타운)	김성자 (32.97/579)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임학동지점)	주식회사 국민은행	
4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636-8(금곡동)	주식회사 코벨소 (32.97/579)			
4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 36, 302호 (노형동, 영보복합빌딩)	김수경 (40.17/579)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인천금융센터)	주식회사 신한은행	
43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495번길 7, 110동 201호 (검암동, 서해그랑블아파트)	이은정 (38.64/579)			
44	서구 금곡동	404-21	전	44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270, 303-802(대화동, 성지마을)	신동국 (1/1)			
45	서구 금곡동	404-24	대	4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안길 1, 3층(금곡동)	유병천 (1/1)	서울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검단지점)	주식회사 우리 은행	
46	서구 금곡동	404-23	전	57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안길 1, 3층(금곡동)	유병천 (1/1)	서울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검단지점)	주식회사 우리은행	
47	서구 금곡동	404-20	도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2도59번길 7, 303동 1902호(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일산파밀리에 3 단지)	정계환 (741/3,042)			
48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10, 511-1501(강촌마 을)	정기영 (156/3,042)			
49					서울 서초구 잠원로 8길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103-1502	정정민 (169/3,042)			
50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5길 35-10, 3동 1008호 (신사동 미성아파트)	정윤영 (156/3,042)			
5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06, B동 1307호 (장항동, 코오롤레이크폴리스 I)	정지영 (156/3,042)			
5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53-36	정호원 (156/3,042)			
5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2길 50(홍제동)	정혜영 (156/3,042)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읍,면,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주소	성명 (지분율)	주소	성명	
54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412, 16동 201호 (가정동, 대진빌라)	정주영 (273/3,042)			
	계			795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412, 16동 201호



소유자 및 관계인 현황(물건)

사업명 : 금곡동 소1-1호선 외 1개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동,리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주소	성명 (지분율)	주소	성명	
1	서구 금곡동	산106-1	간판	철재, 파이프 H=3m	1	인천 서구 금곡동 336-7	연천모터스			
2	서구 금곡동	산106-1	담장	파이프, 함석 H=1.2m, L=31m	1	서울 은평구 연서로 44길 7 421-1601(진관동, 은평뉴타운 폭포동)	김충남			
3	서구 금곡동	485-2	창고	블록, 스투트 3.7×8.0	30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85-1	이강영			
			수목	조경수 철쭉	11					
			수목	조경수 소나무	1					
			수목	유실수 포도나무	30					
			수목	조경수 주목	2					
			수목	조경수 잡목	7					
4	서구 금곡동	484-4	수목	유실수 감나무	2		양인모			
			수목	조경수 소나무	4					
			수목	조경수 철쭉	30					
			조경석	석재	50					
5	서구 금곡동	산87-2	담장	철재휀스 H=1.5m, L=35m	1	인천 강화군 하점면 고려산로 464-20	박상길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읍,면,동,리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수량	주소	성명 (지분율)	주소	성명	
6	서구 금곡동	396	창고	파이프, 천막 4.3×9.1	39	인천 서구 금곡동 390	신경식			
			수목	유실수 감나무	1					
			기계	곡물건조기 HSD-36T	1					
			화장실	블록, 슬라브 1.7×2.3	4					
			비닐하우스	파이프 8.0×4.5	36					
7	서구 금곡동	399-2	간판	철재, H=2m	1	서울 종로구 대학로 19(연지동)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	(재)대한예수 장로교회			
			화단	콘크리트, 벽돌 1.2×3.0	4					
			담장	목조 H=1.2m	1					
			바닥포장	콘크리트	23					
			수목	조경수 회향목	1					
8	서구 금곡동	477-1	수목	조경수 아로니아	8		양인모			

